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
입원·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
부정수급 처분기준

행정처분 기준표

처 분 명	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부정수급 환수	
근거법령	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 나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(부정이익등의 환수) 다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가산금 및 체납처분) 라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 및 제4조 마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	
담당부서	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 (전화 : 043-719-9336/ 팩스 :)	
처분기준	기 준	1. 질병관리청장은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1조의2,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3, 「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」에 따라 수행중인 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의 국가지원금을 지급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, 국가지원금 지급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 가. 「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」을 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유급휴가를 지원한 기간보다 과다한 금액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. 그 밖에 국가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2. 질병관리청장은 위에 따른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 가. 「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」을 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: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급금의 전액 나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유급휴가를 지원한 기간보다 과다한 금액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: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지원금에서 원래 지원받아야 하는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다. 그 밖에 국가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: 잘못 지급된 지원금 전액

	<p>3. 질병관리청장은 부정이익 등 환수하는 경우, 부정이익금과 함께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.</p> <p>가. 이자금액은 부정이익에 따른 환수금액에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의 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납부한다.</p> <p>나.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수로 한다.</p> <p>- 다만, 부정수익자가 환수처분 통지 전에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 등이 발생한 달부터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.</p> <p>4. 질병관리청장은 환수처분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완납하지 않으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.</p> <p>가.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: 100분의2</p> <p>- 다만,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.</p> <p>나.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: '가' 본문에 따른 이자율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0분의 1을 더한 이자율</p> <p>- 다만,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다.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</p> <p>5. 질병관리청장은 처분을 받은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, 그 기한까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</p>
<p>처분절차</p>	<p>처리절차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정수급 신고 및 점검을 통한 적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기관 신고 절차를 통해 신고 ▪ 생활지원비·유급휴가비 사후 점검 등을 통한 적발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체조사 및 수사기관 조사 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자체조사) 서면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진위 판단 ▪ (수사기관)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형사처벌 등 결정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

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background-color: #e6f2ff;">환수 등 처분 결정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부정 이익금 환수 ▪ 제재금 부과 ▪ 명단 공표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↓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background-color: #e6f2ff;">처분의 사전통지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↓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background-color: #e6f2ff;">의견청취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처분 대상자) 처분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, 서면·구두·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 ▪ (처분의 대상자)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가능 ▪ (질병관리청)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반영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↓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background-color: #e6f2ff;">처분통지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밝혀 부정수익자에게 서면 통지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↓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background-color: #e6f2ff;">이의신청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처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이의신청 <p>※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30일 이내에 결정(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안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10일 이내에 기간 연장 가능)</p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↓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background-color: #e6f2ff;">환수 완료 및 영수증 발급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납부 완료 시, 납부자에게 영수증 발급 </div>
비 고	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writing-mode: vertical-rl; text-orientation: upright; padding-right: 10px;">의견 청취 절차</div> <div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처분 당사자는 처분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, 처분 전 질병관리청으로 서면·구두·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. 2. 처분 당사자는 행정청의 부정이익등 환수처분 및 가산금·체납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,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</div> </div>

처 분 명	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부정수급에 의한 제재부가금 부과·징수	
근거법령	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 나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제재부가금의 부과·징수) 다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가산금 및 체납처분) 라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 및 제6조 마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 바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1]	
담당부서	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 (전화 : 043-719-9336/ 팩스 :)	
처분기준	기 준	<p>1.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의 국가지원금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가. 「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」을 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: 제공 받은 지급결정액 전액의 500%</p> <p>나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유급휴가를 지원한 기간보다 과다한 금액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: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지원금에서 원래 지원받아야 하는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300%</p> <p>2. 질병관리청장은 환수를 위한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전,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부정수급 내용을 신고하고,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</p> <p>3. 질병관리청장은 부정청구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가. 부정청구 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: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</p> <p>나. 부정청구 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: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함</p> <p>4. 질병관리청장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·과료, 몰수·추징, 과징금 또는 과태료(이하 "과태료 등"이라 한다)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.</p> <p>가.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 등 보다 많은 경우 :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빼고 부과</p> <p>나.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 : 제재부가금을 면제</p>

5. 질병관리청장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, 몰수·추징, 과징금 또는 과태료(이하 “과태료 등”이라 한다)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.

가.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 등 보다 많은 경우
: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감경

나.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
: 제재부가금을 면제

6. 질병관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**제재부가금을 배제할 수 있다.**

가. 환수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(수회에 거쳐 부정이익을 얻은 경우 그 누적 금액)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

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급여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수당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장애인연금,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복지 급여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·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·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·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·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

다. 제재부가금 부과·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·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7. 질병관리청장은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완납하지 않으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완납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.

가.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: 100분의2
- 다만,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.

나.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: ‘가’ 본문에 따른 이자율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0분의 1을 더한 이자율
- 다만,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.

다.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

8. 질병관리청장은 처분을 받은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**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, 그 기한까지 부정 이익 및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**

※ 행정처분기준 : 별첨

처분절차

처리절차

부정수급 신고 및 점검을 통한 적발

-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기관 신고 절차를 통해 신고
- 생활지원비·유급휴가비 사후 점검 등을 통한 적발

자체조사 및 수사기관 조사 실시

- (자체조사) 서면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진위 판단
- (수사기관)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형사처벌 등 결정

환수 등 처분 결정

- 부정 이익금 환수 ▪ 제재금 부과 ▪ 명단 공표

처분의 사전통지

-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

의견청취

- (처분 대상자) 처분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, 서면·구두·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
- (처분의 대상자)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가능
- (질병관리청)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반영

처분통지

- 「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밝혀 부정수익자에게 서면 통지

이의신청

- 처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이의신청
- ※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30일 이내에 결정(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안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10일 이내에 기간 연장 가능)

제재부가금 납부 완료 및 영수증 발급

- 납부 완료 시, 납부자에게 영수증 발급

	의견 청취 절차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처분 당사자는 처분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, 처분 전 질병관리청으로 서면·구두·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. 2. 처분 당사자는 행정청의 부정이익등 환수처분 및 가산금·체납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,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비 고		

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(제5조 관련)

1. 제재부가금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

부정이익 가액	제재부가금 부과율
가.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	500%
나.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	300%
다.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	200%

2.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.

3.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.

4. 행정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·과료, 몰수·추징, 과징금 또는 과태료(이하 "과태료등"이라 한다)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
가.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: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빼고 부과할 것

나.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: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

5. 행정청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

가.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: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감경할 것

나.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: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것

처 분 명	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부정수급에 의한 명단 공표	
근거법령	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 나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명단 공표) 다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 라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	
담당부서	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 (전화 : 043-719-9336/ 팩스 :)	
처분기준	기 준	<p>1. 질병관리청장은 「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」의 부정수익자가 과거 3년간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(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)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 나. ‘가’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 다. 그 밖에 국가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<p>- 다만,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단공표를 아니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나. 공표 대상자가 「민법」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다. 공표 대상자가 명단공표에 따른 소명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부정이익과 그 이자, 제재부가금, 가산금 등 질병관리청에 납부할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라. 공표 대상자가 충분한 소명을 하여 심의위원회가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. ‘가’ ~ ‘마’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<p>2. 질병관리청장은 위에 해당하는 명단 공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1년간 게시하여야 한다. 공표 대상자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계속하여 게시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공표 대상자의 성명, 상호, 나이 및 주소(기관·법인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·나이·주소 및 기관·법인·단체의 명칭·주소) 나. 공표 대상자의 부정청구등에 따른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다.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p>3. 질병관리청장은 처분의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절차 완료 후,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을 추가로 공표하여야 한다.</p> <p>4. 질병관리청장은 명단공표를 하기 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

처분절차	처리 절차	명단 공표 결정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공공재정환수법」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수익자 명단 공표 결정
		↓
		사전통지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명단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사실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
		↓
		의견 제출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공표 대상자) 명단공표에 의견이 있는 경우, 명단공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에 제출
		↓
		명단 공표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1년 게시 (부정이익금 등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지속 게시)
	의견 청취 절차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명단공표 대상자는 공표 대상자 통지를 받은 후, 소명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에 제출할 수 있다.
비 고		

처 분 명	유급휴가비용 지원금 지급중단	
근거법령	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 나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(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)	
담당부서	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 (전화 : 043-719-9336/ 팩스 :)	
처분기준	기 준	1. 질병관리청장은 「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」의 부정청구 등 발생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,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.
처분절차	처리 절차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 text-align: center;"> 유급휴가비용 국가지원금 부정수급 확인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신고 및 적발등의 방법으로 국가지원금 부정수급 사실 확인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bottom: 5px;"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 text-align: center;">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중단 </div>
	의견 청취 절차	
비 고		

처분명	유급휴가비용 부정수급 행정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	
근거법령	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 나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조사의 실시 등) 나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과태료) 다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(과태료 부과 징수) 라.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2]	
담당부서	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 (전화 : 043-719-9336/ 팩스 :)	
처분기준	기준	1. 질병관리청장은 「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」의 부정이익 등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·징수를 위하여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에게 출석,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- 이와 관련하여, 부정수익자 및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질병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 부과기준은 「공공재정 환수법 시행령」 [별표2]에 따른다. 가. 과태료의 위반 : 200만원 나. 2차 위반 : 300만원 다. 3차 위반 : 500만원 2. 질병관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-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가.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최근 5년 이내 「상훈법」에 따른 훈장 또는 포상을 수상한 실적이 있는 등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.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다. 그 밖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※ 행정처분기준 : 별첨
처분절차	처리절차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e0e0e0;">과태료 부과 사전통지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 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e0e0e0;">의견청취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처분 대상자) 처분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, 서면·구두·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 ▪ (처분의 대상자)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가능 ▪ (질병관리청)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반영 </div>

	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black; background-color: #d9e1f2; padding: 5px;">과태료 부과 통지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부정수익자에게 과태료 부과 세부내용 작성하여 서면 통지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↓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black; background-color: #d9e1f2; padding: 5px;">이의신청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처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이의신청 ※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30일 이내에 결정(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안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10일 이내에 기간 연장 가능)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↓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border: 1px solid black; background-color: #d9e1f2; padding: 5px;">과태료 납부 완료 및 영수증 발급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납부 완료 시, 납부자에게 영수증 발급 </div>
	의견 청취 절차	1. 처분 당사자는 처분 전 질병관리청으로 서면·구두·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.
비 고		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제2호나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거나 제2호라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- 라. 행정청 또는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 - 1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 이내 「상훈법」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수상한 실적이 있는 등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(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)
 - 2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 - 3) 위반행위가 법 제19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을 요구한 자의 주된 책임으로 인한 경우(제2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)
 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제31조제1항 제1호	200	300	500